왜 독도가 한국땅인가?

경영학과 21512178 이승우

 우리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왔고, 한국은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하고, 뚜렷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분쟁지역입니다.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측을 펼치면서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의 가치 때문입니다.

 독도의 가치는 매우 많습니다. 우선 독도의 영토적 가치로써 독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주변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군사적 · 전략적 요충지로 항공 및 방어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위치상 기상 상황과 어장 상황 등을 관측하고 예보하기에 적합합니다.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의 임시 대피소로도 활용됩니다. 경제적 가치로는 독도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으로 플랑크톤과 수산 자원이 풍부합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물이 해저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 메탄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의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가치를 지닌 독도이기에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합니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뚜렷하고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처럼, 한국은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영토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한국땅임이 분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증거들을 시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삼국시대 및 그 이전.
독도는 과거 우산국이라고 불리었다. 서기 512년 6월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했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할 때, 무력에 의한 항복보다는 교묘한 계책을 써서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나무 사자를 만들어 배에 나눠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놓아 모두 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자 512년 6월 항복해,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930년 우산국은 백길, 토두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면서 복속을 원했고 두 명에게 관직을 내렸다.

1018년 고려는 우산국이 동북여진의 침략을 받아 농사를 못하게 되자, 이원구(李元龜)를 보내 농기구를 보냈고1019년 여진족으로부터 도망쳐온 자들을 모두 돌아가게 했다. 1022년 우산국 백성 중 여진족에게 노략질 당하여 망명온 자들을 예주에 거주하게 하고 호적에 편입되면서멸망하였다.

* 고려시대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울릉도는 고려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계의 울진현에 소속된 섬이었으나, 여진 피해로부터 세금 감면의 대상이 아닌 점이나 감창사나 안무사, 혹은 작목사 등의 중앙정부 관리를 수시로 파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울진현의 울릉도에 대한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우산도가 울진현의 속도에 포함되었다는 명시적인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울진현은 원래 고구려의 우진야현이다. 신라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군으로 만들었다. 고려에 와서 현으로 낮추고 현령을 두었다. 여기에는 울릉도가 있다. 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 불렀는데 이 섬의 주위는 100리이며 지증왕 12년에 항복하여 왔다. 태조 13년에 이 섬 주민들이 백길, 토두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의종 11년에 왕이 울릉도는 면적이 넓고 땅이 비옥하며 옛날에는 주현을 설치한 일도 있으므로 능히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인 김유립을 파견하여 시찰하게 하였다. 유립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섬에는 큰 산이 있으며 이 산마루로부터 바다까지의 거리는 동쪽으로는 1만여 보이며 서쪽으로는 1만 3천여 보, 남쪽으로는 1만 5천여 보, 북쪽으로는 8천여 보인데 마을이 있던 옛 터가 7개소 있고 돌부처, 철로 만든 종, 돌탑 등이 있었으며 시호 호본, 석남초 등이 많이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바위와 돌들이 많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 섬을 개척하여 백성들을 이주시키자는 여론은 중지되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원래 두 섬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도 한다”

* 조선 초
 우산국과는 고려때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 11세기초에 여진의 침구를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피난한 이후부터 고려의 직할 구역이 됐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조선 초기 세금을 내지 않으려 주민들이 울릉도로 이주하자, 1416년 (태종 18년) 조정은 섬의 주민을 강제적으로 본토로 이주시켰다. 이듬해 울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자들은 쇄환정책 이후에도 조선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순시 수토제도를 통해 이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1) 세종실록 지리지와 팔도총도.
 1454년(세종 36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울진현조 부분에 동쪽 바다의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을 언급한다. “ 우산과 무릉 두 섬의 현이 정동(방향)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섬의 거리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씨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우삼국이라고 불렀다.”
* 17세기 ~ 18세기
1) 안용복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죽도 혹은 의죽도로 독도를 송도라 부르면서, 울릉도, 독도 등지에서 고기를 잡거나 나무를 도벌하기 시작했다. 이에 1613년 조선조정에서는 대마도주에게 공문을 보내 일본인의 울릉도 등지에 대한 왕래를 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1618년에는 호키주 요네코의 상인 오타니, 무라카와가문이 에도의 도쿠가와막부로부터 정식 면허를 받는 등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침구는 계속되었다. 한편 정부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어부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어장인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과 일본의 어부들은 종종 충돌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을 중심으로 한 동래, 울산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오오따니 가문의 일본어부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1699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두 나라간 울릉도, 독도 영유권에 대해 외교문서가 오가는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논쟁은 울릉도를 죽도라 칭하고 마치 별개의 섬인양하여, 울릉도 점령의 근거를 얻어내려 한 대마도주의 계략을 사서와 안용복의 증언 등을 통하여 간파한 조선조정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후 다시는 울릉도에 왕래하지 않겠다"는 일본 막부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종결되었다.
 위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17세기 말엽에 양국 최고 통치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두 섬이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과,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 그 결과가 양국간 영토의식과 그 경계 획정에 끼친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울릉도 · 독도 등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다. 지금까지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인 순찰을 행하게 되었다. 사정에 따라 격년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평균 5년내에 1회씩의 순찰은 한말 울릉군수가 파견될 때까지 꾸준히 지속되었다.

1)-1 1696년 1월 일본막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하였다. 8월 안용복 2차 도일하였다. 재차 일본에 가서 울릉도문제를 담판짓고, 강원도 양양현으로 돌아온 안용복을 잡아 가두었다. 안용복은 평산포사람 이인성등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일본 백기주로 들어가 울릉 자산 양도 감세라 가칭하고, 태수에게 전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따졌다. 백기주 태수는 울릉도, 독도지역을 침범한 일본인들을 처벌하였고, 안용복에게 ‘두 섬은 이미 조선에 속했고, 다시 침범하는 자가 있거나, 대마도주가 함부로 침범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안용복은 막부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고 강원도로 돌아왔다.
* 2) 동국대지도
1770년경에 만들어진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의 제일 오른쪽에는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 19세기
1) 1877년에는 당시 일본 제국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이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이 섬을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2)1882년 4월 7일 고종이 울릉도 감찰사 이규원에게 울릉도 근방에 있다는 우산도와 송도, 죽도에 대해서 특별히 잘 살피고, 울릉도에 고을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도와 별도의 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규원이 울릉도를 감찰하고, 본국인 140명, 일인 78명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1901년 ~ 1950년1)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울릉도를 독립된 울도군으로 격상하여 울릉도, 죽도, 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하고, 행정책임자인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관제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 군수의 행정을 받다가 울도군으로 승격되어 강원도의 독립 군현 27개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가 임명되었다. 이 칙령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빈번하게 나타나 벌목이나 어업을 불법으로 행하는 일이 극심해지자,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우리나라 영토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하였다.

2)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 시켰다.

3)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도록 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1950년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미국 공군이 1948년 6월 30일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한 일이 있고, 그후 한국전쟁 기간에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해 독도가 미공군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또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어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KADIZ 안에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유엔군 공군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독도 상공을 KADIZ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위와 같이 역사적 사실들을 연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나, 현재의 사실에 기반한 증거들을 보아도 독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입니다. 선조들의 삶이 녹아든 터전, 역사적인 공간이 독도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이 땅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기록될 역사를 위해 독도의 현재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